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정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상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란에서는 관련된 분들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등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판례를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심장질환①

심폐기능마비

· 서울고법 1992. 7. 10 판결, 92구1485인용

· 참조조문 산재법 제9조의 6, 제9조의 8

판결요지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건강한 편이었는데 입사 후 과중한 업무의 수행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또 사망하기 하루전에는 저혈압과 극도의 전신쇠약증이 있어 안정가勁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회사의 업무 때문에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다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심폐기능 마비로 사망한 것이라면 그의 사망은 업무상의 지나친 과로가 그 사인인 심폐기능정지를 직접 유발하였거나 그 유발요인이 되는 다른 질환의 악화를 촉진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어느모로 보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판결이유

1. 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사체검안서), 갑 제5호증(결정통지서), 을 제3호증(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망부인 소외 오규훈은 종래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등으로 15년 이상 일하다가 1987년 11월 23일경 소외 대한제강주식 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1990년 9월 9일 18시경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그의 아파트에서 텔레비전 저녁뉴스를 시청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곧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직접 사인 심폐기능마비로 사망한 사실, 원고가 위 망인의 유족으로서 피고에게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 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9조의 6,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1년 5월 20일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한데도, 피고는 이와달리 보고 위와 같이 부지급결정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갑 제4호증(사체검안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진찰권), 갑 제7호증(건강진단개인표), 을 제2호증의 2(답변서)의 각 기재와 증인 강준모, 같은 김정숙의 각 증언 및 당원의 부천복음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선박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인데 그 직원은 60명 정도이고 사무직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8시 30분부터 19시 30분경까지로서 휴게시간을 빼고 하루 10시간에 이르는 사실,

위 망인은 소외 회사의 경리, 자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는 총무부장으로서 부하직원 3명의 보좌를 받아가며 그 담당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운영자금의 조달업무만은 거의 전담하여 이를 직접 처리하여 왔고, 이 때문에 섭외의 목적상 금융기관의 직원, 사채업자 등과 퇴근 후에도 어울려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특히 1989년경부터는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이 나빠져 친지들에게도 어음할인 할 데가 있는지를 종종 문의하면서 자금조달업무로 인한 정신적 부담을 토로하기도 한 사실,

더욱이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이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더욱 나빠져 위 망인은 새로운 운영자금의 조달은 물론 기조달된 운용자금의 반환기간 도래에 따른 변제금확보를 위하여 고심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고, 이 때문에 가족에게도 회사의 어음을 결제하는데 받은 어려움을 자주 호소한 사실,

그러다가 위 망인은 1990년 8월경에 들어서 더

육 피곤함을 느끼고 체중도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도, 바쁜 업무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 등을 받아 볼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같은 해 9월 6일에 심한 몸살증세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영양제주사를 맞으며 쉰 다음, 같은 해 9월 7일 회사에 출근하여 급한 서류의 결재만 끝내고 오전중에 부천복음내과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 결과 평소 정상이었던 혈압이 최고 90, 최저 50의 저혈압으로 나타났고, 입사이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던 전반적인 건강상태도 매우 쇠약하며 간질환의 의심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담당의사인 소외 조정봉으로부터 15일 정도 입원하여 안정가료를 받아야 한다는 권고받았던 사실.

그러나 위 망인은 곧이어 지급기일이 닥칠 추석보너스의 자금마련을 위하여 의사의 권고에 따르지 못하고, 그날 즉시 회사로 복귀하여 업무를 보고 그 다음날에도 회사에 출근하면서 통원치료 만을 받았는데, 일요일인 같은 해 9월 9일 집에 있다가 위와 같이 갑작스런 사망에 이른 사실.

위 조정봉은 위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결과 직접 사인은 심폐기능정지이고, 간접사인으로서는 확진된 것은 아니라 중증의 간질환이 의심된다고 판정한 사실, 간질환은 정신적, 육체적 과로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될 수 있는 발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심한 정신적 압박감을 받았던 것은 명백하므로, 만일 담당의사인 위 조

정봉이 의중의 간접사인으로 판단할 간질환이 실제로 위 망인에게 있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은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그의 간질환을 급속히 악화시켜 이를 유발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망인에게 그와 같은 간질환의 증세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건강한 편이었는데 그 입사 후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의 수행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또 사망하기 하루전에는 저혈압과 극도의 전신쇠약증이 있어 안정가勁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회사의 업무 때문에 쉬지 못하고 위와 같이 계속 근무하다가 위와 같이 사망한 것인 이상, 그의 사망은 업무상의 지나친 과로가 그 사인인 심폐기능정지를 직접 유발하였거나 그 유발 요인이 되는 다른 질환의 악화를 촉진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어느모로 보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은 위법하다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파결한다.

